

第39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94. 6. 14. ~ 6. 15.)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1994. 6. 통권 제37호

I. 제3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3

II. 제3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7

III. 부 록

1. 의사일정 17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 19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증개정조례안 29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4년 6월 14일 (화요일) 11시 00분

議事日程 (제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3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
2. 제3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사회: 의사과장 강인형)

(11시 00분 개식)

● 의사과장 강인형

지금부터 제3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제39회-제1차]

(11시01분 개의)

● 의장 김영세

성원이 되었으므로 3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1. 경과보고

(11시 01분)

● 의사과장 강인형

의사과장 강인형입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 및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94년 6월 4일 교육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자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공고 제94-7호로 집회 공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회기 의결안건 처리사항입니다.

제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96학년도 국·중학교 설립계획안과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94년 5월 24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회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기에는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증개정조례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박병해위원님께서 상증으로 출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3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03분)

● 의장 김영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통보한 바와 같이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제39회 임시회는 6월 14일부터 6월 15일까지 2일간으로 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3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6월 14일부터 6월 15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증개정조례안

(11시 04분)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증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각각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지난 5월 16일 공무원 복무규정이 대통령령 제14,262호로 개정됨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과의 복무에 형평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공무원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 연가일수의 제한을 완화하여 법정연가일수의 범위내에서 연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승진이나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와 원격지간의 전보명령을 받고 부임할 때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이 공무원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휴가에 있어서는 공무원 본인측의 경조사와 배우자측의 경조사간 형평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식,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백·숙부모 사망시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탈상시를 특별휴가사유에 각각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난 5월 16일 국내 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14,263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국가공무원과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의 여비에 형평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여비의 종류중에 식탁료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두건의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형평을 기하고자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의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제2차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예, 그러면 본 건 조례안은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11시 07분)

● 의장 김영세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재희, 이근수 두 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제39회-제1차]

<p>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39회 충청북도교육 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이재희, 이근수 두분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p>	<p>두분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 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p>																																												
<p>○ 출석위원 : 10명</p> <table border="0"> <tr> <td>의 장</td> <td>김영세,</td> <td>부의장</td> <td>이상일,</td> </tr> <tr> <td>위 원</td> <td>이재희,</td> <td>위 원</td> <td>홍신희,</td> </tr> <tr> <td></td> <td>김응복,</td> <td></td> <td>김광수,</td> </tr> <tr> <td></td> <td>이근수,</td> <td></td> <td>김사수,</td> </tr> <tr> <td></td> <td>권혁풍,</td> <td></td> <td>장충호,</td> </tr> </table> <p>○ 출석공무원 : 12명</p> <table border="0"> <tr> <td>교육감</td> <td>정인영,</td> <td>부교육감</td> <td>박동기,</td> </tr> <tr> <td>초등교육국장</td> <td>김태길,</td> <td>관리국장</td> <td>신재철,</td> </tr> <tr> <td>공보담당관</td> <td>정금옥,</td> <td>기획감사담당관</td> <td>신택희,</td> </tr> <tr> <td>행정관리담당관</td> <td>이기수,</td> <td>초등교직과장</td> <td>김재성,</td> </tr> <tr> <td>총무과장</td> <td>고일영,</td> <td>행정과장</td> <td>이상찬,</td> </tr> <tr> <td>재무과장</td> <td>정현등,</td> <td>시설과장</td> <td>박성근.</td> </tr> </table> <p>○ 의사일정(안) : 별첨1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2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3</p>		의 장	김영세,	부의장	이상일,	위 원	이재희,	위 원	홍신희,		김응복,		김광수,		이근수,		김사수,		권혁풍,		장충호,	교육감	정인영,	부교육감	박동기,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정금옥,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정현등,	시설과장	박성근.
의 장	김영세,	부의장	이상일,																																										
위 원	이재희,	위 원	홍신희,																																										
	김응복,		김광수,																																										
	이근수,		김사수,																																										
	권혁풍,		장충호,																																										
교육감	정인영,	부교육감	박동기,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정금옥,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정현등,	시설과장	박성근.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4년 6월 15일 (수요일) 11시 00분

議事日程 (제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 의장 김영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1분)

● 의장 김영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1항, 2항을 각각 분리해서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예, 질의있으십니까?

(권혁풍위원 “예”하고 대답)

예, 권위원 질의하십시오.

● 권혁풍 위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그 주요골자에 세번째 보면은 “공무원이 공무원의 목적으로 국외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장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를 폐지한다”고 돼있는데 물론 공

무외의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참 자유롭게 여행을 갔다올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아마 이런 취지가 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공무원이 국외여행을 간다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벗어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신고도 하지 않고 간다면은 언제 어디에 가서 뭐 있는지 이것도 모른다면은 그 중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불편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인데 어떻습니까?

● 의장 김영세

예, 그뿐입니까?

(권혁풍위원 “예”하고 대답)

또 다른 위원 질문있으십니까?

(이재희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예, 이재희위원 질문하세요.

● 이재희 위원

저도 이 복무조례중개정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참 우연한 기회에 그 시의회하는 걸 참관을 했는데 내무부에서도 이와 같은 게 와가지고 지방공무원들도 인제 개정을 하는 걸 봤는데 물론 우리 교육청 산하 직원들도 타 부서에 비해서 불리한 그 법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문제는 우리는 학생들 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들이 대부분인데 정말로 방금 권위원님도 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국민학교같은 경우에는 교과담임제가 아니고 전담제로 되어 있는데 참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학기중에 연가를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외국에 갔을 때 어떤 그 교육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런지 뭐

한번 좀 궁금해서 여쭙보고 그 다음 두번째는 지금 전국이 일일생활권으로 돼있는데 원격지라고 해도 충북도내에서는 뭐 이 영동에서 단양 또 인제 다소 인제 뭐 도간 교류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과연 지금 일일 생활권인데 이런 조문을 여기다가 삽입을 할 필요가 있는지 그 좀 여쭙보고 싶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또 다른 위원 질문있으십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의장 집행청을 향해)

예, 그럼이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될 수 있습니까?

(관리국장 “예”하고 답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먼저 권혁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여기에서 그 공무원의 신고제도를 폐지하면 그 공무원이 그 행선지나 이런 거를 모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종전에는 해외여행을 갈 때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해서 “몇일부터 몇일까지 어느 나라를 다녀오겠습니다.”하는 것을 신고를 해가지고 행선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 여행의 자유화가 되는 바람에 공무원에게 굳이 신고를 받지 않더라도 공무원이 연가를 낼 때에는 연가에 사유가 있습니다.

무슨무슨 사유로 연가를, 특히 인제 외국같은 걸 나갈때는 해외를 나가기 위해서 며칠간 연가를 내겠습니까는 그런 그 허가, 연가원을 낼 때 거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굳이 신고를 받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이번에 신고제가 폐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내용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기중에 연가를 낼때에는 그 교육에 차질이 오지 않느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거의 선생님들 대부분이 학기중에 해외여행을 가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종전에 이 신고제를 저희들이 실시했을 때에도 보편은 거의가 방학을 이용해서 해외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또 만부득이 해서 부모님이 해외에 거주하시거나 또는 형제자매가 해외에 있으면서 무슨 애경사가 있을 경우에는 부득이 가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자적 양심에 맡겨서 “내가 아이들을 팽개치고 해외여행을 하겠다.”하는 선생님들은 거의 이제까지 찾아본 예가 없었습니다.

그걸 미루어봐서 저희들이 이 신고제를 폐지하더라도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무모하게 아이들의 교육에 지장이 오도록 나누면서 해외여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격지간의 그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필요한 그 공가를 하도록 돼있는 규정은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의 일생활권에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권역이 지금 돼있습니다마는 오지에 지금 부임을 받고 갈 때에는 예를 들어서 도내 발령만 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제주도에서 강원도 산간벽지로 공무원은 근무지를 변경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럴 경우에 비행기 사정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하루를 오고 다시 또 하루를 간다고 할 경우에 그 부임기간을 공가로 처리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을 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의가 일일생활권이기 때문에 이런 원격지간을, 조항을 인용해가지고 공가를 내는 경우를 거의 드물습니다.

그러나 만부득이한 경우,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에, 공무원이 해외에 근무발령을 받을 때 그럴 때는 원격지가 되기 때문에 공가처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발령을 받았다 하면은 떠나는 날 부터 부임하는 날까지는 공가처리를 해서 원격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을 살려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보충질문없습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예, 그럼 더이상 질의없으시죠?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다른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예,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서 이의없으시죠?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8분)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자꾸 하나 빼는 거니까 이의없으시죠?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예,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다른 의견 없으시죠?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예,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역시 없으시죠?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기타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예. 권혁풍위원님

● 권혁풍 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뭐 우리가 모두다 참 충분히 알고있다시피 현재 지금 북한에서는 그 핵문제를 가지고서 우리 세계전체를 긴장의 도가니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때로는 전쟁을 벌이겠다는 그 협박까지도 하고 있고 과연 참 전쟁이 날 것이냐, 안 날 것이냐 하는 것은 참 아무도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날 가능성도 있고 안 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그 긴장이 엄청나게 고조되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래서 비상시를 대비해서 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 났다든가 전쟁에 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할 때는 엄청난 그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를 한다는 뜻에서 며칠전에 교육감님께서 안보의식고취에 대한 그런 그 답화말씀인가 하는 것이 마스크에 보도가 된 일이 있습니다.

상당히 그 시의가 적절한 아주 참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참 공감을 합니

다.

또 오늘도 보니까 6월 17일날 그 교육장 협의사항에 역시 호국보훈과 안보교육에 관한 그런 그 항목이 있어서 안보교육에 대한 새로운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상당히 그 공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과연 그 안보의식의 교육의 방향이 어떠한 방향이며 어떠한 내용을 갖고서 하고 계신건가, 우리는 주로 그 학생을 상대로하고 학부모를 상대로 합니다마는 그 가장 그 일상적인 일상생활속에서 물론 민방위 당국에서 여러가지 주의를 주겠습니다마는 역시 학생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생활수칙, 평상시의 어떤 생활을 해야되며, 어떠한 그 준비, 마음의 준비, 정신적 자세,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연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을 갖고서 그런 안보의식 교육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또 다른 위원 뭐 질문없으시죠?

예,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중등교육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예."하고 답변)

(중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눔)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중등교육국장 박준용입니다.

지금 권혁풍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호국안보의 교육에 대한 기본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사전준비는 없습

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알고 있는, 또 하고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기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교육은 미래지향적인 방향과 그리고 국가보위에 대한 애국애족하는 그런 정신을 길러주는 것이 청소년들의 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질문하신 호국안보의 교육방향은 첫째가 애국애족정신을 길러주는 것을 첫째로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나라의 사정에 의해서 양단된 이러한 고충을 우리 후세들이 인식을 하고 빠른 시일내에 통일을 해야되겠다하는 그런 의식을 길러주는 그러한 점에서 통일안보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둘째의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기본 방향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고 있느냐, 첫째 애국애족정신은 나라사랑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사랑교육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첫째, 이 국기 그리고 국가, 애국감니다. 그리고 국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갖는데서부터 애국애족하는 그러한 정신을 길러주는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안보의식을 위해서는 지금 잘 아시는 바와같이 6.25이후의 세대들은 6.25의

참상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전후세대들에 대해서 그 6·25 참상을 어떻게 하면은 인식시켜주느냐 하는 그러한 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지를 순례하는 그런 방향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약 200명이 조국순례대행진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첫째 우리 본도에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고장을 순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은 먼저 진천에 있는 길상사를 들리고 그 다음 동락국민학교 김재욱교사 기념관을 들리고 조령 삼관문에는 행군을 해서 일정을 마치는 걸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 길상사를 들리는 목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유신 장군의 생각로서 우리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그 정신을 이어받고 동락국민학교에 들리는 것은 6·25의 참상을 보다 더 잘 이해시키기위해서 거기에 김재욱교사가 정보를 제공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기념관을 6·25를 이해할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들름으로 인해서 그런 의식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령을 들르는 것은 이제 임진왜란 때에 우리가 거기에서 철저히 격퇴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러지 못하고 후퇴된 그런 상

황을 인식을 해서 조국에 대한 애국하는 그러한 의식을 길러주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안보에 대해서 글짓기라든가 포스터를 그려본다든가 또는 나의 주장을 발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6·25의 참상을 스스로 인식하는 그러한 내용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가족을 위문한다든가 또는 충훈탑을 참배를 한다든가 또는 주변을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각종 학생들의 수련활동을 통해서 지금 고등학교에서 그 교련교육이 조금 희석되어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각종 수련기회에 질서교육을 가미를 해서 일단 유사시에 일사불란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질서교육을 강화하는 면도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우리 민족자존의식을 가지고 또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가지고 우리 조국이 하루 빨리 통일되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의식을 받도록 교육내용을 챙기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마 이런 정도로 우선 요약을 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보충질의있으십니까?

(권혁풍위원과 김응복위원 동시에 거수로 발언신청)

(김응복위원을 향해)

예, 가만있어요. 원질문자한테 먼저 드리죠.

● 권혁풍 위원

국장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기본방향이 애국애족이고 통일의식교육을 하고 있다.” 이견 뭐 평소에 늘 일반적으로 하고 계신 그런 그 안보교육의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평소에 하는 것은 물론 그대로 즉 계획대로 실천해 나가야 되겠습니까마는 지금 때가 긴박한 때에 있다, 이러한 그 긴박함속에서도 물론 평소에 그 계획대로 즉 평온하게 밀고 나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특별히 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해야될 일, 물론 그 민방위당국에서 무슨 얘기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가 그 긴장상태에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전쟁불감증이라고 하나 뭐 그런 얘기도 좀 있다시피 뭐가 뭔지 아직 잘 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데 무언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생활수칙, 예를 들면 뭐 비상식량을 갖다가 조금씩이라도 좀 준비한다든가 비상약품 혹은 거기다 뭐 양초라든가 이런 거를 준비시킨다든가 이게 참 오도가 되면은 혼란이 야기되기가 쉬우니까 이게 참으로 예의주시를 해서 평온하면서도 적당한 긴장을 불러 일으키고 그속에서도 또 의연한 자세를 갖고서 어떤 그 패배주의라든가 무질서라든가 퇴폐라든가 과소비 지금 굉장한 과소비를 겪고 있는데 이런 걸 떨쳐버리고서 어떤 그 적극적인 자신감을 갖는다든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승공정신, 우리가 북한보다 GNP

가 16배가 넘는데 왜 우리가 지느냐, 만약 전쟁이 나더라도 당연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그 자신감, 그래서 패배의식을 떨쳐버린다는 것, 그 요즘 애기들자니까 벌써 뭐 짐보따리 싸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러한 그 분위기가 고조된다면 바로 이 김일성이 바라고 있는 그대로인데 이걸 우리가 사전에 차단하고 자신있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다는 그런 국민정신만 된다면 김일성도 감히 전쟁을 못일으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그 교육내용이 들어가야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에서 다시 말씀을 드려봅니다.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칫하면은 참 혼란을 야기하고 그런 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오늘 신문을 보고 놀랐습니다.

서울의 모 백화점에서는 평소의 3,4배의 고객들이 몰려들어서 비상식량을 준비하는 그런 보도가 나온 걸 저도 보고 과연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저 자신을 반성하고 시사에 대한 둔감이 있는가 이런 것을 자책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교육에 있어서도 항상 계기교육이라는 것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사교육을 각급 학교에서는 철저하게 해서 학생들이 이런 때일수록 참 안

[제39회-제2차]

정을 가지면서 어떠한 승리감을 갖는다든가 또는 절대로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된다든가 이러한 차원의 교육을 각급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소비 문제인데 이것도 역시 항시 저희들이 절약정신을 지도하고 있는 차원에서 계속적인 지도가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어떻게 보충질의…….

● 권혁풍 위원

그래서 뭐 물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제시하겠습니다마는 6월 17일날 그 교육장협의회 때는 좀 더 그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지금 때가 비상시국이라고 보겠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그런 그 협의사항가지고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될 그 수칙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전달해주시는게 좋으리라 저는 이 건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예, 계획을 해서 교육장협의회 때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김응복위원 뭐 보충질의있습니까?

● 김응복 위원

없어요.

● 의장 김영세

예, 없습니까?

예, 지금 권혁풍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소위 지금 우리가 위기에 처했다고 보는데 이 위기에 처한 우리의 관심 또는 우리의 교육방향을 어떻게 조정하고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기를 위기대로 느끼지 못하고 구태의연하게 대처하는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교육에서도 신속하게 교육방향에서 그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점을 참고로 해서 하루속히 반영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없으시죠?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예, 이것으로 제3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폐회)

○ 출석위원 : 10명

의 장	김영세,	부의장	이상일,
위 원	이재희,	위 원	홍신희,
	김응복,		김광수,
	이근수,		김사수,
	권혁풍,		장충호,

○ 출석공무원 : 9명

부교육감	박동기,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관리국장	신재철,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정헌동,
시설과장	박성근.		

○ 의사일정(안) : 별첨 1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2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3

(별첨 1)

議 事 日 程(案)

第 39 回 忠 清 北 道 教 育 委 員 會(臨 時 會)

1994. 6. 14 - 6.15.(2일간)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94.6.14(화) 11 : 00	※ 개회식 【 제1차 본회의 개의 】 1. 제3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 제안설명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증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제1차 본회의 산회 】	회 기 6.14 - 6.15. (2일간)
6. 15(수) 11:00	【 제2차 본회의 개의 】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 의결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증개정조례안 의결 【 제2차 본회의 산회 】 ※ 폐 회	

의안번호	제 39-1 호
의 결	1994. 6. 15 .
년 월 일	(제 39 회)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4. 6. 4 .

법무담당부서심사필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 면	안 호	29-1
--------	--------	------

제출년월일 : 1994. 6. 4.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개정사유

공무원복무규정이 대통령령 제14,262호('94.5.16.)로 개정됨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과의 복무에 형평을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공무원이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 연가일수의 제한을 완화하여 법정연가일수의 범위내에서 연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제2항).
-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와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함 (안 제21조).
- 공무원이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제도를 폐지함 (안 제24조).
- 특별휴가에 있어 공무원 본인측의 경조사와 배우자측의 경조사간 형평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시,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백숙부모 사망시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탈상시를 특별휴가 사유에 각각 추가함 (안 별표 2)..

□ 개정근거

- 공무원복무규정증개정령 (대통령령 제14,262호)

□ 조 례 안 : 불임

□ 기타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불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불임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단서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을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으로 한다.

제20조제1항본문중 "연 2월"을 "연 60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연 6월"을 "연 180일"로 한다.

제21조본문중 "필요한 기간 공가"를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로 하고, 동조제4호를 제6호로 하며, 동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간의 전보명령을 받고 부임할 때

제22조제6항중 "법 제46조 2에 의한 명예퇴직이나 법 제66조에 의한 정년퇴직"을 "법 제66조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 2에 의한 명예퇴직"으로 한다.

제24조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를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 인	7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 갑	본인 및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 산	배 우 자 (처)	1
사 망	배 우 자	7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5
	자 녀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본인 및 배우자의 백속부모	3
탈 상	배 우 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참 고 자 료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 발췌서
 - 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 제14,262호)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 제17조 (생략)		제1조 ~ 제17조 (현행과 같음)		
제18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생략)		제18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7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제20조 (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2월 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 (병가) ①		연 60일
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6월 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연 180일
제21조 (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1조 (공가)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신설)		4. <u>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u>		
5. (신설)		5. <u>원격지간의 전보명령을 받고 부임할 때</u>		
		6.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현행제4호와 같음)		

현행	개정안
<p>제22조(특별휴가) ① - ⑤ (생략)</p> <p>⑥법 제46조의 2에 의한 명예퇴직이나 법 제66조에 의한 정년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제24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p>	<p>제22조(특별휴가)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법 제66조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 2에 의한 명예퇴직</p> <p>.....</p> <p>.....</p> <p>제24조(공무외의 국외여행)</p> <p>..... (삭제)</p> <p>.....</p> <p>.....</p>

관계법령 발췌서

□ 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 제14,262호)

제16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②제15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병가) ①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 (공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간의 전보명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20조 (특별휴가) ⑥법 제74조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74조의 2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3조 (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다만, 차관급상당이상 공무원의 공무외의 국외여행은 총무처장관이 외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2]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 인	7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 갑	본인 및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 산	배 우 자 (처)	1
사 망	배 우 자	7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5
	자 녀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본인 및 배우자의 백속부모	3
탈 상	배 우 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첨 3)

의안번호	제 29-2 호
의 결	1994. 6. 15 .
년 월 일	(제 39 회)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4. 6. 4 .

법무담당부서심사필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9-2
----------	------

제출년월일 : 1994. 6. 4.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개정사유

국내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14,263호('94.5.16.)로 개정됨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여비에 형평을 기하고자 함

주요골자

- 여비의 종류중 식탁료를 삭제함 (안 제2조).

개정근거

- 국내여비규정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4,263호)

조 례 안 : 붙임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식탁료"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자 료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 발췌서

◦ 국내여비규정 (대통령령 제 14,263호)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식탁료, 이전비 및 가족이전비로 구분한다.</p>	<p>제2조 (여비의 종류)</p> <p>..... (삭 제)</p> <p>.....</p>

관계법령 발췌서

□ 국내여비규정 (대통령령 제14,263호)

제2조 (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이전비 및 가족이전비로 구분한다.